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의안번호	제222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3. 11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23. 4. 27.)됨에 따라 상위법과 시행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(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 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경찰서와의 협조체계

구축 규정 (안 제3조)

라. 경비 지원 절차·범위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 ~ 제10조)

마.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, 포상 및 준용 사항 규정 (안 제11조 ~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및 제3조(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09. 27. ~ 10. 17.(20일)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,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기 시행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제명 변경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→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- 안 제1조(목적) ~ 제2조(정의) :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법에 따라 정비함
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: 방범대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
▶ (현행) 제3조(조직 및 구성), 제4조(임무), 제5조(활동범위), 제6조(신고 등), 제8조(자율방범대연합회)는 법 제3조(조직 및 구성 등)1), 법

제7조(자율방범활동)²⁾, 법 제4조(신고)³⁾, 법 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⁴⁾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.

- 안 제4조(경비 지원 등) : 상위법령(법과 시행령)을 인용하여 조문

-
- 1) 제3조(조직 및 구성 등) ① 자율방범대는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을 둔다.
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2) 제7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3.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3) 제4조(신고)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4) 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을 정비하고 제2항을 개정하여 방법대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5조 ~ 제9조 : 경비 지원을 위한 절차, 지원 중단 사유, 정산 방법, 지도 및 감독 강화, 지원 금액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0조 ~ 제13조 : 자율방법대원들을 위한 교육, 포상 사항 등을 규정함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충실하려 하지만, 현행 법률과 시행령 등이 자율방법대 등의 신고, 관리 및 감독 등의 권한은 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도록 하고, 경비 지원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로 치우쳐 있어,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, 상위법과 기 시행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됨.

참고자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“(이하 “자율방범대 “라 한다)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	<u>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성북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

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② 자율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(이하 “자율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

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2. “성북구 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,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3. “자율방범대원”(이하 “대원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<삭 제>

방법대의 신고지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조(임무) ① 자율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 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② 자율방법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활동범위) 각 자율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. 다만, 특별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
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
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

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6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해당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
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
2.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
3.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자율방법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지원 중단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3.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정산)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

제7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복장 및 장비 구입비

2. 방법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

3. 보험료, 유류비 등 방법순찰 차량유지 경비

4.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

5. 상해보험 가입비

6.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

7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

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
2.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

3. 방법활동 근무일지

제4조(경비 지원 등) ① -----
방법대 및 연합대의 -----

-- 경비의 일부-----.
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

2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

3.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

4.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

을 지원할 경우 활동지역 및 실적,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
3.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자율방범대연합회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

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
설립·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
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접수한
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
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
에 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
하여야 한다.

④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
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
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9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
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
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
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
다.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
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
· 점검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제8조의 지
도 및 점검 결과 방법대 및 연
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
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
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
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-----
지급한 -----
-----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업
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
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
동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
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
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 등
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
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
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범활동
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
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자율
방범대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
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
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
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
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
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
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감독
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·
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
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) ----- 경찰서와 협
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----
-----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지역사회
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
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
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
포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
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
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
사항 이외의 지원에 필요한 사
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
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
령에 따른다.

<삭 제>